

해양IT융합기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해양과학기술(MT) 및 조선기술과 ICT를 융합하여 산학연 협력연구, 학연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연구중심대학, 특성화대학으로 견인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해양IT융합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MT, IT, BT, ET 관련 융합기술 기초, 응용 연구
2. 해양·정보 융합형 ICT 인재 양성
3.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및 국가시범사업 유치
4. 산·학·연 협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5. 산·학·연·정 해양과학기술정책포럼 등 세미나, 학술회의 개최
6. 기술지도,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사업 수행
7. 국내/국외 융합기술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
8.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
9.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
10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연구소에는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0. 4. 14.)

1. 해양 국방IT 융합연구센터, 수산IT 융합연구센터, 해양·수중인프라연구센터, 산·학·연 협동연구센터
2. 연구지원팀: 연구업무에 대한 행정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

제5조 (임직원)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0. 4. 14.)

1. 소장 : 1명
2. 센터장 : 4명
3. 파트장 : 5명

[제목개정 2020. 4. 14.]

제6조 (임직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 연구소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연구소와 관련된 세부업무 및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0. 4. 14.)

③ 파트장은 연구소와 관련된 세부업무 및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20. 4. 14.)

[제목개정 2020. 4. 14.]

제7조 (연구원) 연구소에는 연구원, 전임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보조연구원 및 연구행정원을 둘 수 있다.

(개정 2020. 4. 14.)

- ① 연구원은 융합기술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- ②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소정 절차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- ③ 전임연구원은 융합기술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보좌하며,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- ⑤ 연구행정원은 연구행정 업무를 지원하며,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
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제8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사업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맡고, 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-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본 운용계획의 수립
-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3. 예산 및 결산
- 4.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-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제9조에서 이동]

제9조 (자문위원회)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은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제10조에서 이동]

제 4 장 운영 및 재정 (개정 2020. 4. 14.)

제10조 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국책연구비, 연구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[제11조에서 이동]

제11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 9. 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[제13조에서 이동]

제12조 (연구소 외부인건비)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위촉 또는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인건비가 없기에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, <별표1>의 인건비 계상 및 지급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]

제 5 장 폐 소

제13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[제12조에서 이동]

제 6 장 보 칙 (개정 2020. 4. 14)

제14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 9. 1)

제15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 9. 1)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2020. 4. 14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인건비 계상 및 직급 인정기준 (개정 2020. 4. 14.)

구분	월급여액	계정부담금(월)	동등경력 인정사항
연구위원급	계정부담금(월)에서 4대보험,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을 제외한 금액	5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의 경력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자
박사연구원급		4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
석사연구원급		3,3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사학위 취득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
학사연구원급		2,5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학위 취득자

- ※ 본교 또는 연구참여기관 소속 연구원이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내부인건비로서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고 그 외에는 외부인건비로서 현금으로 계상
- ※ 상기 월기준액은 참여율 100%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 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
- ※ 계정부담금(월)은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이 포함된 금액
- ※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인건비는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상
- ※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는 상기 ‘<별표1>의 인건비 계상 및 직급 인정기준’의 월급여액에 준하여 계상
- ※ 학생인건비(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, 박사후 연수과정)는 정부 기준에 따라 계상
- ※ 본 인건비는 해당 직급의 1차년도 기준 인건비로 근속기간 및 경력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
- ※ 본 인건비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한다.